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의 함께

# 서울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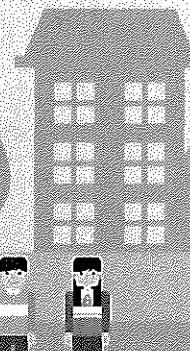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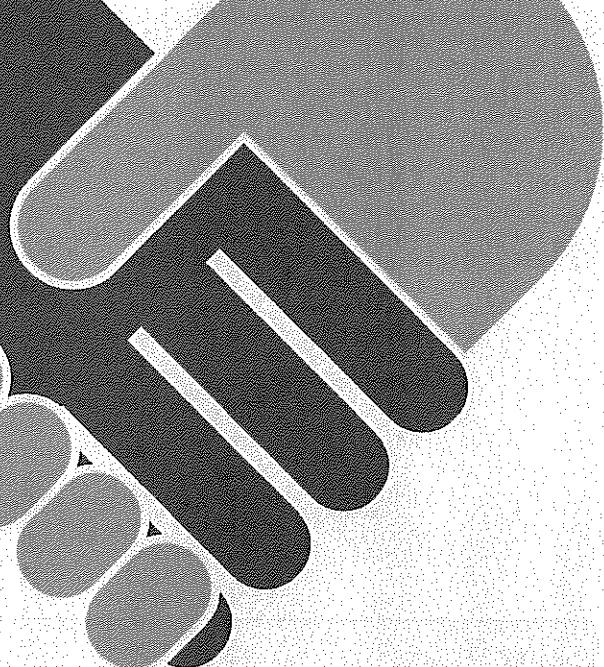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제 3447호

2018. 1. 18.(목)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황판단회의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세부 운영 규정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의 구호 및 복구에 관한 규정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안 제3조~제19조)
- 나.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기준 신설(안 제20조~제27조)
- 다. 재난취약계층 구호품 지원 신설(안 제28조)
- 라. 재난안전상황실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29조~제31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204호****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사용신청 내용을 별지 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 대장에 기록한다.  
 ③ 주무부서는 신청서 접수 후 즉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사용허가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신청서류의 보완)** 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 구술 ·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  
의 방법으로 하되, 신청자가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 수리)**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신  
청을 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  
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신청서 제출 직전년도부터 최  
근 3년간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한 행사

3.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  
되는 행사

4.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연도 광장사용 신  
청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일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사용허가  
신청기간은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넷째 주 금요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 대상 및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수리여부를 확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홈  
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허가신청 순위)**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사용허가신청 순위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  
수된 순서에 따라 정한다.

②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장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에 대한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2. 광장에 설치할 시설물의 위치, 수량, 높이 등이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  
는 경우

3. 광화문광장의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최근 1년 이  
내에 조례 제9조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제7조(준수사항)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 기준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용료 기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단 위	금 액(원)	비 고
사 용 료	m <sup>2</sup> /시간	10원	
기 타	<p>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p> <p>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p> <p>3. 야간사용료(18:00시~다음날 06:00시)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p> <p>4.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할을,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할을 가산한다.</p> <p>*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p>		

[별지 서식]

###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 대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입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 제2조)
- 나. 신청서류의 보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 제3조)
- 다. 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라. 사용허가신청 순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 제5조)
- 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위임사항 신설(안 제6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205호****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8년 1월 18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관리)**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활동으로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청구인이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현장지휘관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소방공무원의 직접적 현장활동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제4조(손실보상의 절차)**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